

의안번호	제 29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11월 1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연월일 : 2008년 11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우리 道 조직개편(2008. 7. 1.)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17개 부서)

- 경제통상국(4개 부서)
  - 경제정책팀 → 경제정책과   · 투자유치팀 → 투자유치과
  - 기업지원팀 → 기업지원과   · 자원관리팀 → 자원관리과
- 균형발전국(4개 부서)
  - 균형정책팀 → 균형정책과   · 지역개발팀 → 지역개발과
  - 교통물류팀 → 교통물류과   · 건축팀 → 건축디자인과
- 건설방재국(2개 부서)
  - 건설정책팀 → 도로과   · 하천관리팀 → 하천과
- 농정국(5개 부서)
  - 농업정책팀 → 농업정책과   · 농산지원팀 → 농산지원과
  - 원예유통팀 → 원예유통식품과   · 축산팀 → 축산과
  - 산림녹지팀 → 산림녹지과
- 문화관광환경국(2개 부서)
  - 관광진흥과 → 관광항공과   · 환경과 → 환경정책과

## □ 부서별 주요개정 내용

### ○ 기업지원과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본 조례 시·군 위임사무에 있어 제외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함

### ○ 균형정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을 시·군에서 일괄하여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 위임 면적의 확대(10만㎡→15만㎡)와,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시설, 봉안시설 등)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군에 위임

### ○ 지역개발과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위임사항을 1만㎡미만의 주제공원까지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시·군에 위임

### ○ 건축디자인과

- 「주택법」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사무에서
  - ▶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으로
  - ▶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시·군 위임사무 삭제

### ○ 하천과

-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무중 개정된 법률에 맞게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추가된 시·도지사 권한 사무에 대하여 시·군에 위임하며, 지방하천의 우수사용(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 농업정책과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와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정비

### ○ 농산지원과

- 「농어촌정비법」에 일부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 ○ 보건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면허증 반납”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

### ○ 수질관리과

-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

3. 조 례 안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련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정과	1 2 3 4	· 도세 징수유예 · 도세 기한의 연장 · 도세 결손처분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지방세법 제41조 동법 제26조의 2 동법 제30조의 3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계과	1 2 3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도유잡종재산 관리 ·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매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6조 동 조례 제3조 하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경제정책과	1 2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야.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수리 나.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다. 영업의 정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2조제5항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제3항, 제4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64조
투자유치과	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사무 가.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라.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에 대한 협의 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투자유치과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처리를 위한 검사의뢰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2항 동법 제37조제5항 동법 제37조제7항 동법 제48조
기업지원과	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2개시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 이하 제21호까지 같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10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2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제9 조, 동법시행규칙제4조
	3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제10 조, 동법시행규칙제3조, 제 5조, 제 6조
	4	·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동법시행규칙제9조
	5	· 노동조합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	동법 제16조, 제21조
	6	· 노동조합의 자료제출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 12조
	7	·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수리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 조, 동법시행규칙제10조
	8	·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 11조
	9	·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및 공고	동법 제36조
	10	· 노동관계의 지원 신고수리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9 조, 동법시행규칙제11조3
	11	·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2 조, 동법시행규칙제12조
	12	· 직장폐쇄 신고수리	동법 제46조, 동법시행규칙제2조의2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96조, 동법시행령제34조
	14	· 노동조합의 대표자등에 대한 명령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11조
	15	· 노동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6	· 폭력행위등의 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18조
	17	·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동법시행규칙 제7조
	18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5조
자원관리과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제3항
	2	·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용량 200KW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동법 제71조
	3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자원관리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변경) 허가</li> <li>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li> <li>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li> <li>라. 지위승계 신고</li> <li>마. 허가의 취소 등</li> <li>바. 과징금 부과징수</li> <li>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li> <li>아.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해임요구 등</li> <li>자. 청문</li> <li>차. 과태료 부과징수</li> </ul> </li> </ul>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동법 제3조의2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 동법 제10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li> </ul>	동법 제34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li> <li>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li> <li>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li> <li>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li> </ul> </li> </ul>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8조제 5항 동법 제58조제6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100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li> </ul>	동법 제71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li> </ul>	동법 제89조제2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li> </ul>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계량수리업, 증명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문</li> </ul> </li> </ul>	동법 제38조 동법 제41조제2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li> </ul> </li> </ul>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34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및 검사등</li> </ul>	동법 제34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명령</li> </ul>	동법 제35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계량기의 처리</li> </ul>	동법 제37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li> </ul>	동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 33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li> <li>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li> <li>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li> </ul> </li> </ul>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 10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li> </ul>	동법 제12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li> </ul>	동법 제13조제3항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li> </ul>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 조 제1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균형정책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삭도</li> <li>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li>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li> <li>사.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아.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 m<sup>2</sup>미만의 주제공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공동구</li> <li>차. 공공공지</li> <li>카. 수도공급설비</li> <li>타. 전기공급설비</li> <li>파. 가스공급설비</li> <li>하. 방송·통신시설</li> <li>거. 시장</li> <li>너. 열공급설비</li> <li>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li> <li>러.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li> <li>머.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li> <li>버. 도서관</li> <li>서. 문화시설</li> <li>어. 연구시설</li> <li>저. 사회복지시설</li> <li>처. 공공직업훈련시설</li> <li>커. 청소년수련시설</li> <li>터. 유수지</li> <li>퍼. 방화설비</li> <li>허. 저수지(댐 제외)</li> <li>고. 방풍설비</li> <li>노. 방수설비</li> <li>도. 사방설비</li> <li>로. 방조설비</li> <li>모. 하수도</li> <li>보. 도축장</li> <li>소. 장례식장</li> <li>오. 종합의료시설</li> <li>조. 폐차장</li> <li>초.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li> <li>코. 폐기물처리시설</li> <li>토. 수질오염방지시설</li> <li>포. 하천(소하천에 한함)</li> <li>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li> <li>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li> <li>누. 화장시설</li> <li>두. 봉안시설</li> <li>루. 자연장지</li> <li>무. 공동묘지</li> </ul> </li> </ul> </li> </ul>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균형정채과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30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동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동법 제32조
	7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동법 부칙 제22조
지역개발과	1	·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분묘등의 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2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동법 제133조
	3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	동법 제32조
	4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5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	동법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6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동법 제98조
	7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2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67조
	8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1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9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자동차지당권에 관한 등록</li> <li>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등</li> <li>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li> <li>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 이행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li> <li>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li> <li>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li> <li>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li> <li>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li> <li>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li> <li>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li> <li>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li> <li>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지당법 제4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7조</li> <li>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8조</li> <li>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li> <li>동법 제14조</li> <li>동법 제16조</li> <li>동법 제20조, 제21조</li> <li>동법 제27조</li> <li>동법 제28조</li> <li>동법 제37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li> <li>자동차등록령 제31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52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li> <li>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등</li> <li>나. 사용신고의 거부</li> <li>다. 도난신고의 처리</li> <li>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li> <li>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li> <li>바.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 원상복구 명령</li> <li>사.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7조</li> <li>동법 제9조</li> <li>동법 제13조</li> <li>동법 제18조</li> <li>동법 제20조</li> <li>동법 제37조</li> <li>동법 제28조</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li> <li>나.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li> <li>다.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li> <li>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li> <li>동법 제29조</li> <li>동법 제26조</li> <li>동법 제28조</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li> <li>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li> <li>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li> <li>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li> <li>마. 등록번호표의 반납</li> <li>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세김 명령등</li> <li>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취소</li> <li>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li> <li>자. 보고 및 검사</li> <li>차.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li> <li>카. 건설기계저당권 등록</li> <li>타.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li> <li>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li> <li>하.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신고의 수리</li> <li>거.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조</li> <li>동법 제3조, 제5조</li> <li>동법 제6조</li> <li>동법 제7조</li> <li>동법 제9조</li> <li>동법 제11조</li> <li>동법 제8조의2</li> <li>동법 제16조</li> <li>동법 제35조</li> <li>동법 제44조</li> <li>건설기계저당법 제5조</li> <li>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li> <li>동법 제34조의2</li> <li>동법 제21조</li> <li>동법 제24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과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6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7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8조
	8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0조
	9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제1항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동법 제39조
		다. 공사의 완성	동법 제39조제4항
		라. 사용개시	동법 제40조
	마. 사용약관 인가	동법 제41조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동법 제42조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동법 제43조제3항	
	아. 터미널의 관리	동법 제43조	
	자. 사고시의 응급조치 및 보고	동법 제44조	
	차.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동법 제45조	
	카. 사업개선 명령	동법 제46조	
	타. 사용명령	동법 제47조	
	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동법 제50조	
	하. 면허의 취소	동법 제76조	
	거. 과징금 처분	동법 제79조	
	네. 청문	동법 제77조	
	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동법 제55조	
	러.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동법 제56조	
	머. 정관변경 등의 명령	동법 제58조	
	버. 재정지원, 조합감독	동법 제51조, 제59조	
	서.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시 관계 행정기관장간의 협의 및 통보	동법 제49조제3항, 제4항	
10	· 자동차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동법 제39조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동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52조	
11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32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동법 제33조	
	라. 사업개선명령	동법 제34조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동법 제11조 제2항, 제36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동법 제15조제1항, 제3항, 제36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동법 제16조제1항, 제36조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동법 제17조제2항, 제36조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동법 제76조	
	차. 청문	동법 제77조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동법 제79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85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축디자인과	1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도로과	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17조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점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5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자. 도로등과의 연결허가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의2 동법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7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동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하천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동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동법 제30조제1항 동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30조제10항 동법 제30조제4항 동법 제30조제5항 동법 제30조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동법 제30조제7·8·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동법 제33조 동법 제33조 제1항제1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2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3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4호 동법 제33조 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하 천 과	10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동법 제33조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동법 제33조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청구 요구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관리	동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동법 제90조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9조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동법 제70조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동법 제27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동법 제38조제1항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동법 제38조제4항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동법 제46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동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	동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동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동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동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동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동법시행령 제9조
	32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시행령 제11조
	33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4	· 도유재산 용도폐지	동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업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중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li> <li>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li> </ul> </li> </ul>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농산지원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li> </ul>	식물방역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승인</li> </ul>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li> </ul>	동법 제23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시행인가</li> <li>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li> <li>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li> </ul> </li> </ul>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2조제3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미만의 논경지정리사업, 발기반정비사업(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li> <li>나. 소규모(10ha미만) 개간사업</li> </ul> </li> </ul>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시설의 등록</li> </ul>	동법 제17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li> </ul>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 제20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유재산 용도폐지</li> </ul>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원예유통식품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li> </ul>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1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징수</li> </ul>	동법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축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li> </ul>	동법 제21조제1항, 제2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li> </ul>	동법 제7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약사 변경 신고의 수리</li> </ul>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 등취급규칙 제10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설의 처분 승인권자</li> <li>나. 재산처분의 제한</li> <li>다.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li> <li>라. 재산처분 제한의 해제</li> <li>마. 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li> <li>바. 시설의 관리책임 등</li> <li>사. 영어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li> </ul> </li> </ul>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8조 동 규정 제39조 동 규정 제40조 동 규정 제41조 동 규정 제42조 동 규정 제43조 동 규정 제44조
산림녹지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병해충의구제·예방에대한 조치명령</li> </ul>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li> <li>나. 천연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li> <li>다.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및 지정해제, 통지 및 고시</li> </ul> </li> </ul>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7조제4항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립 녹 지 과	3	· 종.묘생산업의 등록	동법 제16, 동법시행규칙제13조
	4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동법 제16조
	5	· 보안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 50조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6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동법 제46조
		· 간선임도 설치계획	동법 제44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7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동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법률제 50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법률제 50조	
복 정 책 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재해구호법 제5조
		가. 수용시설의 제공(응급가설주택 포함)	
		나. 급식 또는 식품.의료.침구.화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다. 의료 및 조산	
		라. 이재자의 구출	
		마.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사. 생업알선			
아. 장사			
보 건 위 생 과	1	· 한약사업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약사법 제35조제 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8조
	2	· 한약사업의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49조
	3	· 한약업자 영업소 이전허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4	·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동법시행규칙 제36조
	5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17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2조
	6	· 안마시술소의 청문 및 행정처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 제10조
	7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안마에관한규칙 제8조
	8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조제 2항 동법시행규칙 제 10조부터 제 12조 까지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 위생과	9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0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1	· 마약원료의 양도승인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12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13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동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4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5	· 마약의 소매 보고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16	·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등 출입 기록서류 검사 및 검사용 마약류 수거	동법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7	· 폐기명령 등	동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18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마, 바, 아, 자)	동법 제43조	
	19	·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동법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	· 청문	동법 제45조	
	21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22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동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23	· 몰수 마약류의 폐기·처분 등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24	·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관광 공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2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동법 제50조제4항, 제52조제3항
	환경 정책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17조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 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에서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동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동법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정책과	4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3조제2항, 제3항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동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9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동법 제68조
	10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납부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11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정책과	1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제33조
수질 관리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제21조제6항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제3항 동법 제41조제2항 동법 제42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제1항, 제3항 동법 제61조제2항, 제3항, 제4항
	3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등	먹는물관리법 제42조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정책팀	1~2	(생략)		경제정책과	1~2	(현행과 같음)	
투자유치팀	1	(생략)		투자유치과	1	(현행과 같음)	
기업지원팀	1~17 18	(생략)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도지사가 기 위탁한 일반산업단지와 도지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기업지원과	1~17 18	(현행과 같음)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자위관리팀	1~30	(생략)		자위관리과	1~30	(현행과 같음)	
규형정책팀	1 2 3	(생략) ○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변경은 제외) (생략) 가. ~ 사.(생략) 아. 공위(어린이공위에 한함) 자. ~ 카.(생략) 타.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 파.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하. ~ 로.(생략) 모.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 보. ~ 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법 제30조	규형정책과	1 2 3	(현행과 같음) ○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함) (현행과 같음) 가. ~ 사.(현행과 같음) 아. 공위(어린이공위, 소공위, 1만㎡ 미만의 주제공위에 한함) 자. ~ 카. (현행과 같음) 타. 전기공급설비 파. 가스공급설비 하. ~ 로. (현행과 같음) 모. 하수도 보. ~ 포. (현행과 같음) 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화장시설 두. 보안시설 루. 자연장지 무. 공동묘지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 2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균형 정책팀	4	○ 10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균형 정책과	4	○ 기존면적포함 15만 m <sup>2</sup>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30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조
	5	○ 기존면적포함 10만 m <sup>2</sup> 미만의 산업형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변경)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 m <sup>2</sup> 미만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동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7 <신설>	(생략) <신설>	<신설>		8	(현행과 같음) ○ 종전 법률 제 229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동법 부칙 제 2조
지역 개발팀	1~8	(생략)		지역 개발과	1~8	(현행과 같음)	
	9	(생략)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나. ~ 다.(생략)			9	(현행과 같음)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 m <sup>2</sup> 미만의 주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현행과 같음)	
교통 물류팀	1~11	(생략)		교통 물류과	1~11	(현행과 같음)	
건축팀	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 16조	건축 다량과	<삭제>	<삭제>	<삭제>
	2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 16조		<삭제>	<삭제>	<삭제>
	3~4	(생략)			1~2	(현행과 같음)	
건설 정책팀	1~7	(생략)		도로과	1~7	(현행과 같음)	
하천 관리팀	1	○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4조	하천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생략)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8조		2	(현행과 같음)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하천 관리됨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 변경 승인	동법 제16조	하천과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 군수)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유지보수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신설>	<신설>	<신설>		5	○ 공사위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동법 제29조
	5	○ 비관리청 시행 하천 공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하천법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제3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 제30조제6항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30조 제1항   동법 제30조 제10항  동법 제30조 제4항  동법 제30조 제5항  동법 제30조 제6항
	6	○ 비관리청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 인가 또는 검사의뢰	동법 제31조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 의뢰, 유지·보수	동법 제30조 제7·8·9항
	7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 하천정비 시행계획 및 비관리청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제2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 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동법 제32조
	8	(생략) 가. 유수의 사용 나. (생략)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라. (생략) 마. (생략)	동법 제33조제 항제1호 동법 제33조제 항제2호 동법 제33조제 항제3호 동법 제33조제 항제4호 동법 제33조제 항제5호		9	(현행과 같음) <삭제> 가. (현행과 같음)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삭제>  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번호	번호		
하천 관리법		바.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동법 제33조제 항제6호	하천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동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사.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동법 제33조제 항제7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아. 식물의 재식	동법 제33조제 항제8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자. (생략)	동법 제33조제 항제9호			아. (현행과 같음)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신설>	<신설>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 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 항 제4호
		<신설>	<신설>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 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이상의 시군 관례사항 제 의)	동법시행령 제 35조 제 항 제5호
		<신설>	<신설>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동법시행령 제 35조 제 항 제6호
	9	(생략)	동법 제33조제 항		10	(현행과 같음)	동법 제33조 제6항
	10	○ 지방하천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동법 제33조제 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및 검사의뢰 준공 검사·공사비예치	동법 제33조 제8항
	11	(생략)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조		12	(현행과 같음)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2	○ 지방하천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13	(생략)	동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52조		14	(현행과 같음)	동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14	(생략)	동법 제69조		15	(현행과 같음)	동법 제90조
	15	(생략)	동법 제64조		16	(현행과 같음)	동법 제69조
	16	(생략)	동법 제65조		17	(현행과 같음)	동법 제70조
	17	(생략)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18	(현행과 같음)	동법 제22조제(항) 동법시행령 제22조
	18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연안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 다.(생략)	동법 제 40조 제1항, 동법 시 행령 제31조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 다.(현행과 같음)	동법 제 38조제 1항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하 천 관리팀	19	○ 지방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및 고시	동법 제40제4항	하천과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 구역 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고시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동법 제38조 제4항
	20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 낚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동법 제71제4호 동법 시행령 제50조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 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동법 제46조 제6호, 동법 시 행령 제51조
	21	(생략)	동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53조		22	(현행과 같음)	동법 제47조
	22	(생략)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53조		23	(현행과 같음)	동법 제76조
	23	(생략)	동법 제76조		24	(현행과 같음)	동법 제78조
	24	○ 하천감시위의 임명 등	동법 제68조		25	○ 하천관리위의 임명 등	동법 제72조
	25	(생략)	동법 제80조		26	(현행과 같음)	동법 제89조
	26	(생략)	동법 제81조		27	(현행과 같음)	동법 제91조
	27	(생략)	동법 제88조		28	(현행과 같음)	동법 제98조
	28	<신설>	<신설>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공익사업에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하천구역편입토 지보상에관한특 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29~32	(생략)		30	(현행과 같음)			
31~34	(생략)						
농 업 정책팀	1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농 업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농 산 지원팀	1	(생략)		농 산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2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3	(생략)	동법 제21조		3	현행과 같음)	동법 제23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6 조		5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 조
	6~8	(생략)			6~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원예 유통팀	1	(생략)		원예유통 식품과	1	(현행과 같음)	
보건 위생과	1~24	(생략)		보건 위생과	1~24	(현행과 같음)	
	25	○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 규칙 제9조 내지 제10조		<삭제>	<삭제>	<삭제>
	26	○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단 면허취소는 면허증 최초교부 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동법 제7조 제 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삭제>	<삭제>	<삭제>
관광 진흥과	1~2	(생략)		관광 항공과	1~2	(현행과 같음)	
환경과	1~13	(생략)		환경 정책과	1~13	(현행과 같음)	
수질 관리과	1	(생략)		수질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먹는물관리법 제 18조제2항		가. (현행과 같음)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제2항
	나. (생략)		동법 제18조제 2항		나. (현행과 같음)		동법 제21조 제 6항
	다. (생략)		동법 제21조		다. (현행과 같음)		동법 제24조
	라. (생략)		동법 제22조제 3항		라. (현행과 같음)		동법 제25조 제 3항
	마. (생략)		동법 제33조제 3항		마. (현행과 같음)		동법 제41조 제 3항
	바. (생략)		동법 제34조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42조
	사. (생략)		동법 제36조		사. (현행과 같음)		동법 제45조
	아. (생략)		동법 제38조		아. (현행과 같음)		동법 제46조
	자. (생략)		동법 제39조		자. (현행과 같음)		동법 제47조
	차. (생략)		동법 제40조		차. (현행과 같음)		동법 제48조
	카. (생략)		동법 제42조		카. (현행과 같음)		동법 제50조
	타. (생략)		동법 제43조제 항, 제3항		타. (현행과 같음)		동법 제51조 제 1항, 제3항
	파. (생략)		동법 제51조제 항 제3항 제4항		파. (현행과 같음)		동법 제61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생략)	먹는물관리법 제34조		3	(현행과 같음)	먹는물 관리법 제42조

## 관계법령 발췌

### ● 공통 ●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기업지원과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⑤(생략)

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관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①관리권자가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균형정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결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결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 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 다. 보행자전용도로
  - 라. 자전거전용도로
  - 마. 고가도로
  -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화물터미널
  - 다. 공영차고지
  -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디자인과 ●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천 과

□ 하 천 법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결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



-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1

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 21. 생략
  - ② ~ ⑤ 생략
  - ⑥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⑦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제89조 (허가수수료)** ① 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

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의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91조 (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 (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부과·징수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하천법시행령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에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제41조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1조 (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하천의 이용 목적
- 2. 하천오염원의 현황
- 3. 하천의 수질오염도
-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 2. 낙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낙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낙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과 ●

□ 농 어 촌 정 비 법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농산지원과 ●

□ 농 어 촌 정 비 법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건위생과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수질관리과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 (영업의 승계)** ①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샘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 물 관련 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



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 물 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폐쇄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폐기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먹는 물 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 샘물의 용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먹는 물 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샘플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51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먹는 물 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1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 받은 사항이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